#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9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2381, 2018.07.26)의 조례 표준안 변경 통보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64조)
- 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안 제64조의2)
- 다.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안 제64조의3)
- 라.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지원 적용(신설부칙)
- 마. 별지 서식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근거 조례 정비 등
- 바. 그 밖에 표준조례안 반영용어나 표현 등 정비(안 제64조~제6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시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4.24.~5.14.(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제64조제2항 중 "지원기준은"을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조문신설 2017.11.8.)"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임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한다.

제69조 중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를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로, "위반됨"을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6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	의 작성방법을 읽고	▼▼ <b>■ ● ■ ● ● ● ● ● ● ● ● ● ● ● ● ● ● ● ● ●</b>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Ē	접수일			처리기간	(# 1)
 1. 신:	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u> </u>
 주소				휴대전화번호	_	
 2. 피ㅎ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특	복되는 사항은 작성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			
연락처	휴대전화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성명: 생년월일:
세	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	등학생 수	( ) 고등	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기	<u> </u>	여 [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	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ㅎ	 개내용					
피형	해발생 일시					
	해발생 장소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	도:	, 치료기관명	: )
인명 피해 _	신고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1011	확정	[ ] 사망ㆍ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실직[ ])
	시설명	1	2	3		4)
	총면적(소유+임차)	1	2	3		4
	면허·허가· 등록 번호	1	2	3		4
시설	피해 신고	1	2	3		4
피해	물량 확정	1	2	3		4
	피해 구분	1	2	3		4
	피해 원인	1	2	3		4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	인사항					
 동일서	네대 신고 여부	여 [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여 [ ] , 부 [ ]	내용:			
피형	해신고 여부		-11 6 .			
	울특별시 강서 <sup>-</sup> 같이 신고합니다	구 재난 및 안전관리 ·.	기본 조례」 제	네6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권 등을 받기 위하여
	, ,					년 월 일
			신고	1인:		(서명 또는 인)
강시	<b>너구청장</b>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신·구조문 대비표

혅 颜 정 아 개 제64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6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수습지원(이하"피해수습지원"이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라 하다) 제1항제3호 -----<신 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 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 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_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신 설>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

<신 설>

<신 설>

제6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 제65조(중복지원 금지) ------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 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 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생활안정지원 및 가접지원(이하

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 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 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 게 제6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 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 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 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4조의2에 따 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임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 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인제공자

제6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제6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 시한다. ②~⑥ (생 략)

제69조(환수) 시장은 제6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u>자금이나</u>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64조 및 제65조에 <u>위반됨</u>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u> 치료비 지원</u>
②~⑥ (현행과 같음)
제69조(환수)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u>.</u>

####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및 위 품의 작업법을 읽고 작업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사료를 한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주민들로버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및 신고리파 음일한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업하실 필요 없습니다 즈미드로버ㅎ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재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입대 세입자[] 통신사명 [ ]KT [ ]8KT, 가입자정보 설명: [ ]LQLH [ ]기타 휴대전화 연락처 가입자정보 생년월일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여부 열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비전문제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 부 [ ] 가입자명 계작비중 은한만 계작되다 3. 피해내용 피해박색 역시 피해발생 장소 [ ] 사람·실종, [ ] 부상(부상 정도 신고 [ ] 사업파해(휴업 [ ] / 의업 [ ] / 실직 [ ]) [ ] 사망·실종. [ ] 부생부상 정도 ). [ ), [] 사업피해(휴업[]/폐업[]/실작[]) 확점 <u>시설명</u> ① 출면적(소로+보함) ① 3 면허·허가 · 등록 번호 시설 피해 피해 <u>신고</u> 물량 확점 피해 구분 물자신청 여부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 . 부 [ ] | 내용 타 시 · 군 · 구 여 [ ] . 부 [ ] 내용 피해신고 여부 「OOA」 군구 시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래」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월 및 (서명 또는 민) 신고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삼지(80g/뉴) 또는 중절자(80g/뉴)] 개인정보 수집 ㆍ 미용 동의 본민의 신교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작/군수/구철작이 생활한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교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u>CO시작군수 구원적이</u> 출자 등의 간점 지원을 위한 자료로 <u>「CO시 군구 사회에난 구호 및 불구 지원에 관한 교회, 개원교에</u> 따른 위한 기원에서 환경할 수 있도록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출고한다다. - 불하여 참으로 <u>CON 군구 지원에는 경호</u> 불구<u>자원이 관한 교회</u> 게임에 따른 하라고 가면에 관점 서류를 직접 취용하여야 한다. 신고인 작성방법 1. 피해신고 대성은 생활면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람(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회,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시험령」 제63조에 따른 집해통급을 환란할 수 있는 경우 집해통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규분값에는 말답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십 매출/전파 반파/철수 중 해답하는 것을 적습니다 4. 급열 처리된 부분은 말달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교서 작성

수렇

#### <별지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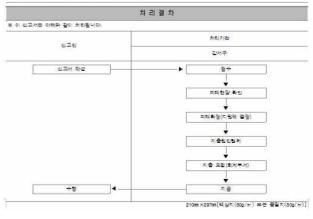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교에 따라 화극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점이 들자 등의 간점 자원을 위한 자료로 <mark>'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 및</mark> <u>안전권리 기본 조에, 게87조</u>에 따른 해당 가라에서 황목한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물의 한니다. \* 중의하지 일본면 <mark>(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 및 안전관리 기본 조에, 제87조에</mark> 따른 해당 가라에 관련 사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니다.

#### 작성 방법

- 1. 피해신교 대상은 생활만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달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의 사람(건이한 부상, 중심해 등)을 적회,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시험령」 제83초에 따른 집애름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집애름급을 적습
- 피해 구분값에는 답답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십 대통/전하/반파/참수 중 해답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몸열 처리된 부분은 답답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점습니다



피해현장 확인

지 출원 인행유 지층 요천(회계부서)

210mm×297mm[백실지(80g/m) 또는 출질지(80g/m)]

### 관계 법령

## 침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3.8.6., 2017.1.17.>

- 1. 자연재난
-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부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8.1.18.]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3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 득을 상실한 경우
  -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가. 공공시설의 복구
  -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 라. 합동분향소 설치 · 운영 등의 추모사업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시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비용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O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만 적용
-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지원금을 받거나, 재난피해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향후 『강서구 시민안전보험 가입』시행으로 보상금 수령 시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O 또한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및 복구지원 비용은 재난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 O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피해 발생에 따라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4. 작성자

O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담당자 : 행정7급 박현철 2600-6439)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사유

○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변경 통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64조)
-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안 제64조의2)
-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안 제64조의3)
-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지원 적용(신설부칙)
- 별지 서식 내 신고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근거 조례 정비 등
- 그 밖에 표준조례안 반영용어나 표현 등 정비(안 제64조~제69조)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19 - 14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안전관리과	통보(조기	치)일	2019. 5. 1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20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관리과			
	담당자명	박현철	전화번호	02-2600-64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5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2381, 2018.07.26)의 조례 표준안 변경 통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 조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14일

##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안전관리과장 귀하